

■ 최신 판례 ■

[보험] 단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

배성진 변호사

1. 사실관계

피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같은 작업장을 사용하는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, 甲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乙 회사에 고용된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의뢰받고 A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그의 실제 소속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를 甲 회사의 직원으로 보고 원고 회사¹와 단체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)을 체결함.

A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 A가 甲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됨.

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원고 회사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 102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.

2. 쟁점

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

3. 판시사항

¹ 갑 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의 관계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음.

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,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4. 해설

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소속 피용자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, 단체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.

이에 대해 대법원은 “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”를 보험모집인에게 부과하였습니다.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험계약자 측에 적극적으로 고지·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배려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다만 이 사건의 경우 과거에도 피고 보험회사가 유사한 방법으로 무효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정,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재직증명서조차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

5. 다운로드 : [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다91590 판결](#)